
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,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함.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·의결한 권한과 사무의 일부를 이양함.

II. 검토의견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개정안은 현재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¹⁾을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권자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.

1)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5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그런데, 국가환경센터 지정취소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해양수산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26조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) ①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	제26조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, 지역환경교육센터-----</u> ----- -----.

(전문위원 이 화 실)